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
----------	----

제출연월일 : 2006. 12.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2005. 12. 21자로 고시된 2006년 ~ 2007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2206)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한시지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 정규직제화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08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72명으로 함(안 제2조)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995명⇒3,059명(증 64명)

나. 한시지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정규직제화 추진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함(안 제3조)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예산조치 : 별첨 1 참조

다.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 해당 없음

라. 입법 예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3,008명”을 “3,072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2,995명”을 “3,059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008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2,995명</u> <p>제3조(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u>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4.1.29 대통령령 제8247호)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 (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

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원의 규정) ①시·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 2004.1.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

제3조(표준정원)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2206, 2005.12.21)

구 분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3,072	3,164	

시·도교육청 정원채정 현황

(2006. 3. 6 현재)

시·도 교육청	표준정원 (A)	보정-표 준정원과 의차이 (B-A)	보정정원 (B)	채정정원 (C)	채정정원 대비율(%)	
					표준정원 (C/A)	보정정원 (C/B)
서울	7,553	226	7,779	7,553	100.0%	97.1%
부산	3,905	117	4,022	3,905	100.0%	97.1%
대구	2,728	81	2,809	2,728	100.0%	97.1%
인천	3,203	96	3,299	3,203	100.0%	97.1%
광주	1,662	49	1,711	1,711	102.9%	100.0%
대전	1,763	52	1,815	1,763	100.0%	97.1%
울산	1,607	48	1,655	1,607	100.0%	97.1%
경기	12,204	366	12,570	12,204	100.0%	97.1%
강원	3,988	119	4,107	3,988	100.0%	97.1%
충북	3,072	92	3,164	3,008	97.9%	95.1%
충남	4,378	131	4,509	4,378	100.0%	97.1%
전북	4,178	125	4,303	4,178	100.0%	97.1%
전남	5,078	152	5,230	5,121	100.8%	97.9%
경북	5,566	166	5,732	5,566	100.0%	97.1%
경남	5,605	168	5,773	5,605	100.0%	97.1%
제주	1,226	36	1,262	1,230	100.3%	97.5%
합계	67,716	2,024	69,740	67,748	100.0%	97.1%

<별첨-1>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정원채정 비율 반영)

- 정원의 총수 : 3,008명 → 3,072(증64명)
- 일반직(32명) : 5급 2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7명
- 기능직(32명) : 7급 2명, 8급 4명, 9급 10명, 10급 16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379,984	
인건비	1,911,606	
- 기본급	145,177	< 2006년도 예산편성 단가 기준 > ○ 일반직 - 5급(2명) 23호봉 기준 - 6급(9명) 23호봉 기준 - 7급(14명) 12호봉 기준 - 8급(7명) 5호봉 기준 ○ 기능직 - 7급(2명) 30호봉 기준 - 8급(4명) 23호봉 기준 - 9급(10명) 14호봉 기준 - 10급(16명) 7호봉 기준
- 수 당	99,840	
- 정액급식비	95,640	
- 교통보조비	119,312	
- 명절휴가비	198,854	
- 가계지원비	59,656	
- 연가보상비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물건비	94,32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94,32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전경비	374,058	
- 성과상여금	79,541	
- 연금부담금	244,713	
- 국민건강보험금	49,804	
- 연금지급금		